금융위원회 / 금융감독원	보 도 자 료			힘내라 대한민국
	보도	2020.6.11.(목) 11:00	배포	2020.6.11.(목)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보험건전성제도팀장 김 종 훈(02-2100-2577)	담 당 자	김 민 수 사무관 (02-2100-2578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강 한 구(02-3145-7460)		박 지 선 부국장 (02-3145-7450)
			이 준 교 팀 장 (02-3145-7466)
	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김 봉 균(02-3145-7240)		정 영 락 팀 장 (02-3145-7244)
			손 인 수 팀 장 (02-3145-7243)

제 목 : 재보험업(Reinsurance) 제도개편방향 발표
[「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」 제5차 회의결과]

◆ **보험회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협력자로서 '재보험업'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하는 제도개편방향 논의**

◆ **재보험업 허가종목을 세분화하고, 자본금요건을 완화하여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경쟁을 강화**

□ 금융위원회는 6월 11일(목)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「**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**」 **제5차 회의**를 **개최**하여

○ 「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」 등에 대해 **논의**하였습니다.

<「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」 제5차 회의 개요>

- **일시/장소** : 2020.6.11(목), 11:00~12:0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- **참석기관** : 금융위원회(부위원장 주재), 금융감독원(부원장보), 예금보험공사, 보험개발원, 회계기준원, KDI, 금융연구원, 보험연구원, 자본시장연구원, 생보협회, 손보협회, 보험분야 전문가

1 제도개편 검토배경

□ 현행 보험업법은 **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種目*으로 분류**함으로써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, 영업행위규제 등을 **손해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**하고 있습니다.

* 種目으로 분류한다는 의미는 재보험을 자동차보험, 도난보험 등 손해보험업이 영위하는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임

○ 이에 따라 제도의 취지상 **재보험사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**가 있을 뿐만 아니라

○ 재보험은 보험사와 재보험사의 1:1계약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모집을 위한 **영업행위 규제측면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**되는 상황입니다.

* 재보험사의 소비자는 보험사에 한정되므로 모집 등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보험사에 비해 소비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규제완화 필요

□ 또한, 보험업법(§4②)은 생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우 별도의 재보험 허가신청이 없더라도 **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.**

○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재보험업을 위한 **사업계획 등**에 대한 **금융당국의 검토없이 재보험업을 영위**하고 있으며,

○ (재)보험의 경우 허가 이후 **일정기간**(예:6개월) **영업행위**를 하지 않더라도 (재)보험 **허가를 회수하는 명문규정이 없어** 다른 **금융업 허가와 다르게 운영**되고 있습니다.

* 생명보험사 중 S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는 재보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모두 **재보험(손해보험업) 라이센스를 보유**하고 있으며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허가를 철회한 사례도 없음

□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, 재보험업이 보험회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**'재보험업 개편방향'**에 대해 「**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**」에서 논의한 후 관련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.

〈현행 재보험 제도현황〉

□ 손해보험업의 한 種目

○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별도의 業으로 규정하지 않고 **손해보험업의 한 種目으로 분류**하여 관리

- 허가요건, 영업행위규제 등에 있어 **사실상 손해보험업과 동일하게 규율**

* 미국, 독일 등의 경우 재보험업을 보험업에서 분리하여 영업행위 규제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

□ 재보험 허가간주

○ 생명보험업 or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종목의 **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**

- 재보험 허가를 위한 **사업계획 검토 등 절차가 전무**

* 미국, 독일 등의 경우 재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토 후 허가가 이루어짐

□ 세분화된 재보험종목의 不在

○ 생보재보험과 손해재보험은 재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**재보험종목의 세분화가 안됨**

* 다만 생보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생보재보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. 미국 등은 생보재보험 등으로 구분

〈 현행 재보험업의 법적 지위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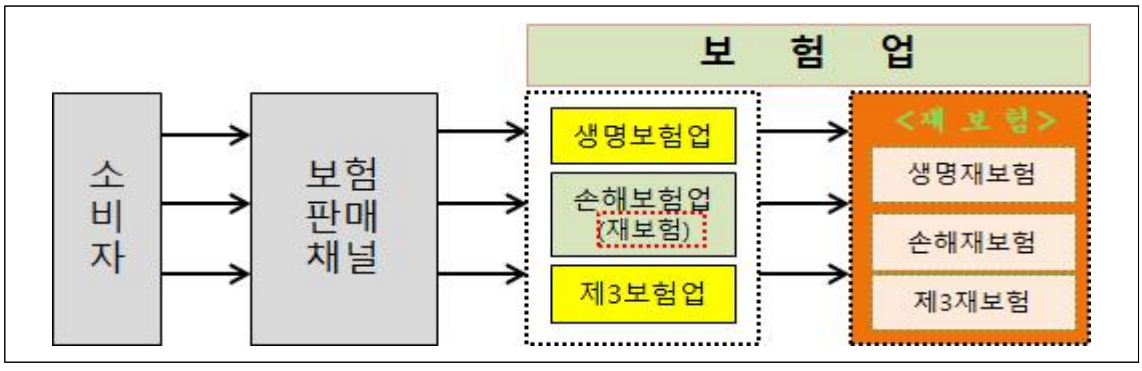

2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

1 (손해)보험업과 재보험업의 구분

○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業으로 분리*하고, 재보험업에 대한 **허가요건, 영업행위규제 등 여러측면**에서 **규제완화 또는 차등화**하겠습니다.

*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닌 보험업과 대등한 관계의 별도의 업으로 분리·독립적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임

-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상 허가요건, 영업행위 등 **條文別 규제의 재보험업에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**

* 6월부터 금감원, 협회, 재보험사 등과 '재보험업 실무TF' 구성·운영하여 현행 제도의 완화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

2 재보험 허가간주제 폐지검토

○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**허가간주제는 폐지할 계획**입니다.

* 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회사가 사후에 재보험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재보험업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

○ 기존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**재보험업 영위의사** 및 **영업요건 충족 여부**를 **확인**하고 재보험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3 재보험업의 종목 세분화

○ 재보험업을 ①생명보험재보험, ②손해보험재보험, ③제3보험재보험 등 **3종목으로 나누고,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완화***하겠습니다.

* (예)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원이나, 종목 세분화 이후 각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요건을 100억원으로 인하

〈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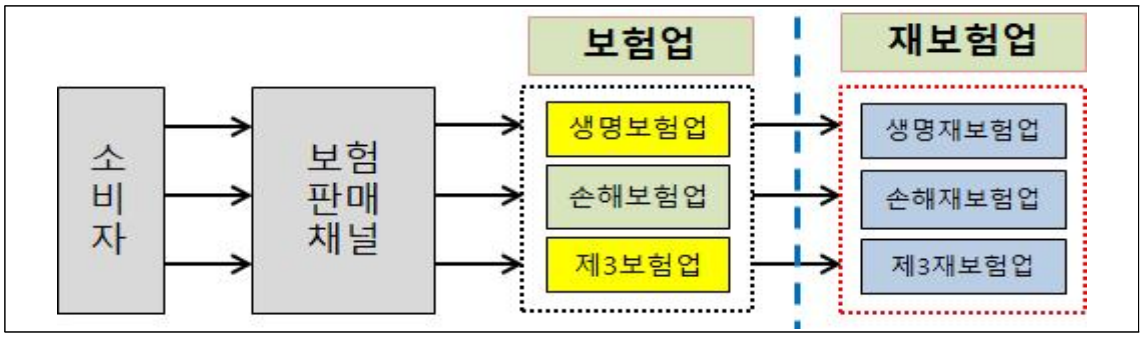

3 개편에 따른 효과

□ 재보험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

○ 손해보험업에 적용하는 규제 중 재보험업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명시적으로 적용배제함으로써 그동안의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.

○ 재보험업의 1:1계약적 측면을 고려하여 모집, 영업행위 등 모든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특화 재보험사 신규설립 촉진

○ 재보험업 허가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하고,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□ 재보험업 겸영허가절차 개선

○ 재보험업이 별도의 “業”으로 분리됨에 따라 다른 금융업의 겸영허가방식*과 유사하게 겸영허가 제도를 정비

*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·중개업자(증권사)가 신탁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각각에 대해 인가여부를 심사

4 향후 계획

□ 먼저, 재보험업의 개편에 따른 허가요건, 영업행위규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**‘재보험업 실무TF*’를 구성·운영**하겠습니다.

* 실무TF는 6월부터 금감원, 보험회사, 재보험사, 보험·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보험업법의 條文別 검토를 진행할 계획

○ TF를 통해 검토된 **‘재보험업 개편방안’ 세부내용**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**금년말까지 국회에 제출**하겠습니다.

※ 별첨 : 부위원장 모두말씀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참고 **기타 논의사항**

1. 주요 내용

□ 新지급여력제도(K-ICS) 3.0 마련

○ K-ICS 3.0은 '19.7월 발표한 K-ICS 2.0을 기반으로 국제보험자본기준(ICS) 개정사항 및 국내 금융산업의 특성을 추가 반영하는 등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였습니다.

□ IFRS17 재무영향평가 준비상황 논의 등

○ 2023년 예정된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(IFRS17) 시행시 차질없는 도입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전반의 재무영향을 추정하는 등 감독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.

2. 향후 계획

□ 지급여력제도 개편과 관련, 올 하반기 中 全보험사를 대상으로 K-ICS 3.0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.

○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수용능력, 금융시장 여건 등 고려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등 K-ICS가 2023년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.

□ 보험회사의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준비가 미진한 회사를 지원하겠습니다.

○ 또한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(IFRS17)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평가를 추가실시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